카카오뱅크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요약)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설명을 이해했다고 서명하신 이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 기본정보

(2026.11.01. 현재 기준)

<table>
<tr><td>가입대상</td><td colspan="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td></tr>
<tr><td>가입기간</td><td colspan="4">1년, 2년, 3년 (단, 디폴트옵션의 경우 3년만 가능)</td></tr>
<tr><td>최소 가입(납입)금액</td><td colspan="4">1원 이상</td></tr>
<tr><td rowspan="4">기본금리 (연 %)</td><td>계약기간</td><td>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td><td>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IRP)</td><td>디폴트 옵션</td><td rowspan="4">기본금리는 조회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로서 변동될 수 있음
카카오뱅크 인터넷홈페이지(www.kakaobank.com)의 금리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메뉴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금리안내)</td></tr>
<tr><td>1년</td><td>3.85</td><td>3.80</td><td>-</td></tr>
<tr><td>2년</td><td>3.50</td><td>3.40</td><td>-</td></tr>
<tr><td>3년</td><td>3.50</td><td>3.40</td><td>3.40</td></tr>
<tr><td rowspan="3">만기 시 처리방법</td><td colspan="3">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만기 시 자동재예치</td><td>약정금리를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td></tr>
<tr><td colspan="3">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만기 시 자동해지</td><td>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td></tr>
<tr><td colspan="3">디폴트옵션 :
•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 만기 시 자동재예치
•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 없이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 만기 시 자동해지</td><td>약정금리를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td></tr>
<tr><td>긴급출금
(일부중도해지)</td><td colspan="3">가능</td><td>만기일 전에 납입금액 중 일부를 최대 2회까지 출금 가능</td></tr>
<tr><td rowspan="2">예금자보호</td><td colspan="3">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비보호
</td><td>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 colspan="3">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디폴트옵션 : 보호
</td><td>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td></tr>
</table>

상품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 (최저 연 0.1%)**
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만기 후 금리가 적용 (만기까지는 약정금리 적용)**

※ 본 상품은 카카오뱅크 수신사업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99-3333)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akaobank.com)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전체)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설명을 이해했다고 서명하신 이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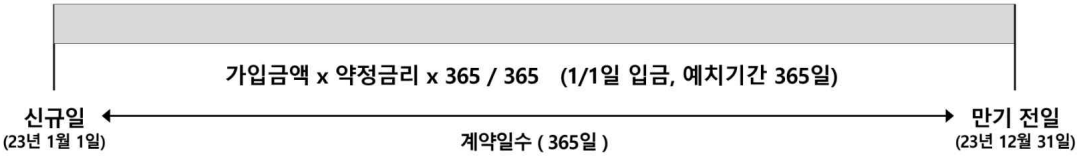
상품개요

-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예금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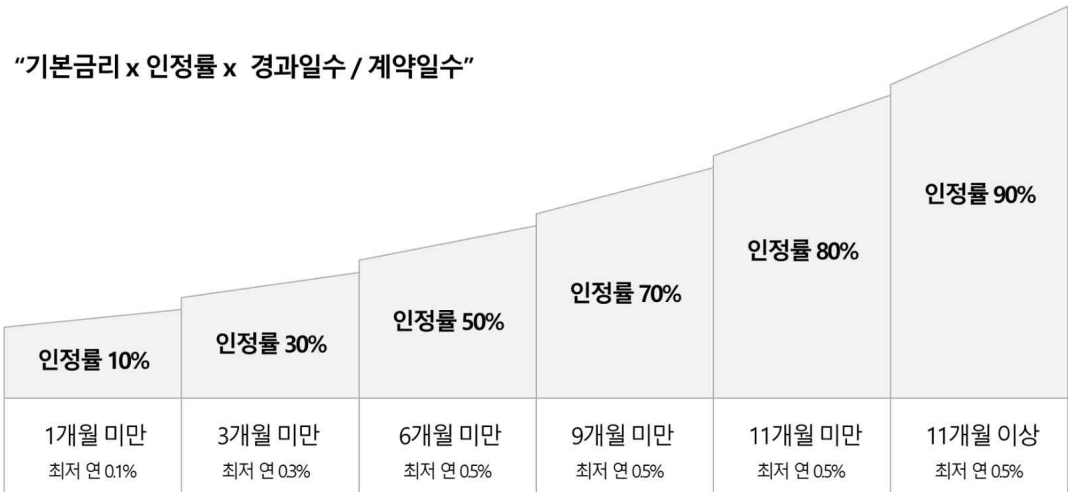
상품 주요내용

(2026.11.01. 현재 기준)

<table>
<tr><td>가입대상</td><td colspan="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td></tr>
<tr><td>가입기간</td><td colspan="4">1년, 2년, 3년 (단, 디폴트옵션의 경우 3년만 가능)</td></tr>
<tr><td>가입금액</td><td colspan="4">1원 이상</td></tr>
<tr><td>기본금리 (연 %)</td><td colspan="4">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이 상품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 아래 기본금리는 조회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로서 변동될 수 있음
- 카카오뱅크 인터넷홈페이지(www.kakaobank.com)의 금리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메뉴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금리안내
<table>
<tr><th>계약기간</th><th>확정급여형(DB)</th><th>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th><th>디폴트옵션</th></tr>
<tr><td>1년</td><td>3.85</td><td>3.80</td><td>-</td></tr>
<tr><td>2년</td><td>3.50</td><td>3.40</td><td>-</td></tr>
<tr><td>3년</td><td>3.50</td><td>3.40</td><td>3.40</td></tr>
</table></td></tr>
<tr><td>이자계산방법</td><td colspan="4">신규 시 예치한 가입금액에 대해 예치한 기간만큼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지급

“ 가입금액 x 약정금리 x 예치기간 / 365 “ 만큼 이자 지급

</td></tr>
</table>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이 상품의 중도해지금리 적용



중도해지금리 (연 %)

예치기간	적용금리	최저보장금리
1개월 미만	가입(자동연장) 시 기본금리 x 10% x경과일수/계약일수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가입(자동연장) 시 기본금리 x 30% x경과일수/계약일수	0.3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가입(자동연장) 시 기본금리 x 50% x경과일수/계약일수	0.5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가입(자동연장) 시 기본금리 x 70% x경과일수/계약일수	0.50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가입(자동연장) 시 기본금리 x 80% x경과일수/계약일수	0.50
11개월 이상	가입(자동연장) 시 기본금리 x 90% x경과일수/계약일수	0.50

특별중도해지 및 적용금리 (연 %)

아래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 금액은 관계 법령에서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

■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4조 제5항 및 그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2.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가입자가 기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제도전환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임
 라. 가입자의 사망
 마.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나.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또는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특별중도해지금리

계약기간	예치기간	특별중도해지 적용금리
1년	1년 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계약한 약정금리
2년	2년 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1년제 약정금리
3년	2년 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1년제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년제 약정금리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또는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계약한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B

상품 주요기능

긴급출금 (일부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출금 가능** • 신청기간 :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 출금횟수 : 계약기간 중 최대2회 (만기 자동재예치 시 재예치된 계약기간마다 최대 2회) • 출금조건 : 출금 후 잔액이 1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 • 적용금리 : 출금금액에 대해 이 예금의 중도해지금리 적용
만기 시 처리방법	**확정급여형(DB) : 만기 시 자동재예치** • 약정금리를 제외하고,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예치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만기 시 자동해지** •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환되며, 상환전일자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됨 **디폴트옵션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 만기 시 자동재예치** ✓ 약정금리를 제외하고,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예치 •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 없이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 만기 시 자동해지** ✓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환되며, 상환전일자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됨

상품 기타내용

예금과목	**정기예금**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 ※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해지 시에도 해지일에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됨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됨**	
거래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예금주)와 전문(電文)을 통해서만 거래**	
만기경과 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해당 없음**	
예금자보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비보호**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

	디폴트옵션 : 보호 	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해당 없음**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방법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가능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신탁의 실물이전제도를 통한 명의변경은 양수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카카오뱅크 수신사업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99-3333)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akaobank.com)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